

수원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1가단5760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채명성

변 론 종 결 2022. 12. 7.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1. 5. 14.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4. 4. 27. 주식회사 D으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E 유한회사가 2009. 11. 16. F 유한회사를 통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후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 유한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31. E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C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18. 1. 18.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의 남편 G이 2021. 3. 15. 사망하였고, C와 G의 자녀인 피고, H는 2021. 5. 14. G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G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와 G은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피고와 H를 양육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G의 유일한 상속재산으로 보이고, 아들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여 어머니인 C를 부양하기 위해 C와 H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된 점, ③ C의 동생 K이 사업을 하고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발생하였고, K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를 진행한 법무사 J은 C와 H에게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C와 H가 채무를 확인하는 이유를 묻자 고의로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채무가 있으면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절차를 안내한 점, ⑤ 피고는 C의 아들이나, 피고와 C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C의 채무내역에 대해 알고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약 20년 전 발생한 것으로 C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2018. 1. 3.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부동산 목록

(1등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평층레브지붕 13층아파트
 지하층 543.3754㎡, 1층 569.9824㎡, 2층 570.9344㎡
 5층 내지 12층 각 564.7744㎡, 13층 439.400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 2322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24.988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3224분의 60.9031 ㎡.

